

의안번호	제 87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발 의 자 : 김국기, 박성원, 최경천,
김영주, 이수완, 임동현,
정상교 의원

1. 제안 이유

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과 이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(안 제5조)
- 마. 인구교육 협의회 (안 제6조)
- 바. 인구교육주간 (안 제7조)
- 사. 협력체계 구축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
- 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

라. 입법예고: 2021.9.24.(금) ~ 2021.9.29.(수)

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·고령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 증진 및 대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교육”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(이하

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인구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
2.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3.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
4.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5.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
6.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교원의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구교육 협의회)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인구교육주간) ① 교육감은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주간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주간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관련 캠페인, 홍보, 각종 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인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3.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3.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2.5.23.]

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조례안 제4조에 따라 인구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거나 안 제7조에 따라 인구교육주간을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